제27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강사: 김창록
소속: 건국대학교 법대
주제: 체결 40주년에 돌아 본 한일조약
일시: 2005년 10월 25일 (12 : 00 – 14 : 00)

*강연 내용
2005년 8월 26일, 한국 정부는 한일조약에 관한 문서를 완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외교관, 학자들의 평가가 나왔지만, 한일조약 문서 완전공개라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평가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는 언급이었다. 한일조약 문서 공개에 있어, 기본권과 청구권 협약에 관련된 과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었고, 남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될 연구팀이 구성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1. 기본조약 제 2조
<기본조약 제2조에 관한 한일 간의 입장 차이>
한국은 조약들이 과거 일본의 침략주의의 소산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당초부터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 것으로 'もはや(이미)'라고 강조되어 있는 이상 소급해서 무효라고 해석한다. 이에 대해 일본은 조약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もはや'라는 표현은 현재의 시점에서 이미 무효가 되어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서술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한다.
<기본조약 제 2조에 관한 일본의 변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던 일본은 1995년 이후에 들어 식민지 지배를 통해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적 사실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할 만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1995년 '종전 50주년'을 맞이하여 발표된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법적인 유효성을 주장하여, 일본의 '법적 무책임의 원칙'을 고수했다.
<평가>
1965년 기본조약에 'already'의 표현을 삽입함으로써, 조약에 대한 합의는 '애매성에의 합의', '무합의에의 합의'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렸다. 이 때문에 한일관계는 비정상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여전히 미합의, 미해결의 상태가 되었다.
<일본의 '합법부당론'에 대해>

한국의 요구는 효력문제에 관련된 요건사실에만 입각한 것이 아니며, 식민지 지배에 대한 가혹한 실상과 그러한 역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요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협정 제2조 등

<1965년 합의, 조치>

1965년,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해석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1) 일본 정부의 해석

* 협정 제1조의 '경제협력의 증진'과 제2조의 '권리문제의 해결' 사이에는 법률적 상호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 권리문제는 협정에 의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결착되어 있음.
* 개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협정으로 소멸된 것은 그것에 관한 국가의 외교보호권 만임.
* 한국인의 권리 중에 '재산, 권리 및 이익"은 그에 관한 국내법적 조치인 법률 제144호에 의해 소멸되었음.

2) 한국 정부의 해석

* 협정 제1조와 제2조 사이에는 상호관계가 존재.
* 65년 당시 한국인의 대일정부 및 일본국민에 대한 각종청구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
* 90년대에 협정에 의해 소멸된 것은 외교보호권 만이고,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
* 2002년, 한국인 피해자 100명이 협정문서 공개를 요구한 데 대해, 정부의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후, 정부가 대일 민간청구권에 대한 보상 입법을 통해 일본국을 대신해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종료했다고 주장.

<평가>

1) 합의의 존재 유무

청구권자금과 재산 및 청구권 문제 해결 사이에 법적 관계, 협정에 의해 소멸된 권리의 범위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의 해석은 다르고, 각국의 해석이 시대와 국면에 따라 다르다.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에 대한 한일 양국 정부의 명확한 합의가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

2) 무엇이 해결되었는가?

협정에서 해결된 '재산, 권리 및 이익' 과 '청구권'이 무엇인지가 애매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을 통해 해결된 권리의 범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965년 당시 한일 정부는 협정이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이 말하는 일본과 한반도의 분리와 분할에 수반되는 재정상, 민사상의 권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제의 36년간 식민지적 통치의 대가는 협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식민지적 통치의 대가에 관한 문제는 1965년에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

이면, 이것은 여전히 한일 간의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한일 양국 정부의 책임>

1) 한국 정부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처리된 한국인의 권리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 70-80년대의 일련의 법률에 따라 보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이 남아 있다.

2) 일본 정부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처리된 한국 및 한국인의 권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한다. 일본은 스스로 협정 1조에 의해 한국 정부에 제공하는 자금은 2조의 문제 해결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1995년 무라야마 담화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한국국민에 대해서, 식민지 지배로 인해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할만한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여전히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3. 맺음

1965년 한일 간의 기본조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한반도지배의 성격에 관한 합의는 성립하지 않고 있으며,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은 단지 식민지 지배에서 발생한 문제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있다. 냉전이 종식된 후에야 비로서 일본은 식민지 지배의 문제성을 인정하였고, 한국도 1965년 체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게 되었다. 한일 관계의 우호를 위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공개, 진상에 기초한 적절한 조치, 사죄와 구제, 역사 교육 등이 요구된다.